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256
----------	------

2020년 03월 06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 의 자 : 김기덕 의원 외 11명
- 나. 제 안 일 : 2020년 02월 04일
- 다. 회 부 일 : 2020년 02월 12일
- 라. 상 정 일 : 제291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0년 2월 28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기덕 의원)

가. 제안이유

- 시각장애와 청각장애를 같이 가진 중복장애인의 경우 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렵고, 정보공개청구는 더욱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집행기관의 장은 행정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시청각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며, 시청각장애인의 행정정보공개 청구와 정보 접근이 편리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집행기관의 장은 행정정보를 공개할 때 시청각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며, 시청각장애인의 행정정보공개 청구와 정보 접근이 편리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4조제4항 신설).
-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서울특별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4조제5항 신설).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장애인복지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
- 다. 입법예고(2020. 2. 17. ~ 2. 24.) 결과 : 의견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가. 조례 개정 취지 검토

- 본 개정조례안은 시각장애인과 시청각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형태로 행정 정보를 제공하고, 행정정보공개 청구와 정보 접근이 편리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 제4조 제4항)하고자 하는 것임.
- 본 개정안은 관계 조례(「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내용을 추가 보완하여 장애인의 알권리를 충족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서울시 시청각장애인 및 시각장애인 현황 (기준일 : '19. 12. 31.)

구분	시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비고
인원	1,282명(중증 87명)	41,842명(시청각장애인과 중복)	

○ 구별 시각장애인 현황

(단위 : 명 / 기준일 : '19. 12. 31.)

구별	인원	구별	인원	구별	인원	구별	인원	구별	인원
종로구	717	동대문구	1,551	노원구	2,780	강서구	2,834	관악구	2,296
중 구	735	종랑구	2,043	은평구	2,345	구로구	1,920	서초구	1,214
용산구	991	성북구	1,921	서대문구	1,336	금천구	1,167	강남구	1,582
성동구	1,193	강북구	1,992	마포구	1,463	영등포구	1,574	송파구	2,088
광진구	1,337	도봉구	1,651	양천구	1,715	동작구	1,569	강동구	1,818

나. 세부 내용 검토

1)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행정정보 공개 편의성 제고(안 제4조 제4항)

- 안 제4조제4항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 및 시청각장애인(시각 및 청각 기능이 손상된 장애인)에게 행정정보를 공개할 때 접근가능한 형태로 제공하도록 하고, 행정정보 청구와 정보 접근이 편리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 등에 점자정보단말기 등 보조기를 제공하고 있으며, 본 개정을 통해 시각 및 시청각장애인에게 점자정보단말기 제공외에 보다 더 다양한 형태의 정보제공 및 접근성 향상 등 정보 취약 구조를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현행	개정안
제4조(집행기관의 책무) <신설>	제4조(집행기관의 책무) ④ 집행기관의 장은 행정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시각장애인과 시청각장애인(시각 및 청각 기능이 손상된 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접근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며, 시각장애인과 시청각장애인의 행정정보공개 청구와 정보접근이 편리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이는 장애인이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고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통신·방송시설·점자도서·음성도서 등 이용접근성을 개선·지원하며, 도구의 개발·보급 노력을 규정한 관계법령(「장애인복지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부합한다고 하겠음.

「장애인복지법」 제22조(정보에의 접근)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방송시설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각장애인이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점자도서와 음성도서 등을 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이용에 필요한 지원 및 도구의 개발·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6조(공공기관의 의무) ①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계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공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정보의 전자적 공개) ①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으면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다.

최근 3년간 점자정보단말기 보급현황(개인) (기준일 : '19. 12. 31.)

구분	계	2019년	2018년	2017년	비고
보급대수	44대	12대	18대	14대	

※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계획(데이터담당관) : 보조기기 가격의 80% 지원, 개인부담 20%

공공기관 점자정보단말기 비치현황

(기준일 : '20. 2. 10.)

구분	서울도서관 (중구)	서울점자도서관 (노원구)	강서점자도서관 (강서구)	국립장애인도서관 (서초구)
비치대수	2대	2대	2대	5대

※ 장애인도서관 10개소 중 2개소만 점자정보단말기 비치, 개인이 보조금으로 구매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음

□ 점자정보단말기 이용현황

(기준일 : '20. 2. 10.)

구 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비고
서울도서관	없음	없음	11건(2명)	4건(3명)	4건(2명)	
서울점자도서관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강서점자도서관	없음	104건(2명)	104건(2명)	104건(2명)	104건(2명)	

※ 청구없이 정보를 공개하는 청구인 '서울정보소통광장'은 「국가정보화기본법」에 따라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아 운영 중에 있음.

※ 웹접근성 품질인증(Web Accessibility) : 장애인 및 고령자가 웹 사이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접근성 표준을 준수한 우수 사이트에 대해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품질을 인증하고 마크 부여

○ 또한, 청구에 의한 정보 공개의 경우 시각장애인과 시청각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형태인 점자, 음성, 수화 등의 확대 제공할 필요성과 부정확한 정보 제공이나 변환 불가능, 장애인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은 없는지 여부와 함께 이에 대한 보안대책 마련 필요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정보공개법」의 “정보”는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등이 해당되며, 문서 외에는 점자 변환이 불가능하고, 문서에 표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점자로 변환된 자료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과 외부 업체에 점자 변환을 의뢰할 경우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에 기재된 청구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관리대책도 필요하다고 하겠음.

※ 정보공개 청구방법별 현황(2019년 총 18,881건)

- 정보공개포털(16,889건, 89.4%), 직접방문(1,877건), 우편·팩스 등(115건)

○ 한편, 관련법령(「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보 접근이 아닌 ‘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바, ‘정보 접근과 ‘정보 공개에 대한 기준 설정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2)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보고 규정 신설(안 제4조 제5항)

- 안 제4조제5항은 시각 및 시청각장애를 가진 중복장애인에게 행정정보 공개 청구와 정보 접근이 가능한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집행기관의 책무)	〈신 설〉	제4조(집행기관의 책무)		⑤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서울특별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현행 장애인에 대한 정보접근성을 위한 시행계획(참고자료①)은 스마트도시정책관 관련조례(「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에 따라 수립하고 있으나, 정보접근성 대상자를 장애인으로 포괄규정하고 있는 바, 시각 및 시청각 장애인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계획 미비와 운영상 사각지대 발생 소지가 있고,
 - 행정국에서도 동 조례(「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행정정보 공개를 제공하고 있으나, 정보 접근의 수단으로 점자정보단말기 보급과 이용에만 국한하여 운영하고 있고, 점자정보 이외에 음성, 수화 등 다양한 형태의 행정정보 공개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 ※ 행정정보 공개의 운영실태 등 담당 소관 실국 및 근거
 - 소관 실국 : 행정국
 -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 정보공개 조례」
- ※ 장애인에 대한 정보 접근성 향상 시행계획 소관 실국 및 근거
 - 소관 실국 : 스마트도시정책관
 -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 본 개정조항은 시각 및 시청각장애인으로 대상을 구체화하여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시행계획의 개선 효과와 행정정보 공개 방식 등 종합적인 운영 및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특정 대상(시각·청각장애인)의 접근성 향상실적을 개별 조례에 따라

개별부서에서 보고·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적정한지, 정보취약계층을 포괄적으로
 관련조례(「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의 여지는 있을 것으로 사료됨.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
 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제5조의 서울
 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한다.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4. 자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현재 정보공개 추진실적은 운영실태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매년 발간하여
 공개하고 있는 바, 이를 시각 및 청각 중복장애인에게 어떻게 제공할지
 여부와 조례 개정에 따른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방안
 마련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서울시 정보공개심의회 개최현황

▶▶ 연도별 현황 2010-2018

(단위 : 건)

구분	개회횟수			심의의견				안건처리결과				
	계	실질	서면	계	이의	직권	사전	전부인용	부분인용	기각	각하	부존재등 기타
2018	21	21	-	76	69	3	4	20(26.3%)	30(39.5%)	26(34.2%)	-	-
2017	18	18	-	60	47	11	2	20(33.3%)	13(21.7%)	25(41.7%)	-	2(3.3%)
2016	16	16	-	55	35	17	3	10(18.2%)	18(32.7%)	22(40.0%)	2(3.6%)	3(5.5%)
2015	16	16	-	70	39	30	1	10(14.3%)	29(41.4%)	25(35.7%)	3(4.3%)	3(4.3%)
2014	19	19	-	84	33	50	1	9(10.7%)	25(29.8%)	43(51.2%)	1(1.2%)	6(7.1%)
2013	17	17	-	67	19	45	3	7(10.4%)	19(28.4%)	40(59.7%)	-	2(5%)
2012	16	12	4	40	19	21	-	11(27.5%)	18(45%)	9(22.5%)	-	2(5%)
2011	13	-	13	17	17	-	-	1(5.9%)	5(29.4%)	10(53.8%)	1(5.9%)	-
2010	8	-	8	13	13	-	-	3(23.1%)	3(23.1%)	7(53.8%)	-	-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재석위원 10명, 전원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덕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56
----------	------

발의년월일 : 2020년 2월 4일
발 의 자 : 김기덕, 김광수, 김제리, 김정환,
유정희, 송명화, 김경영, 송정빈,
김생환, 이광성, 유 용, 이광호
의원 (12명)

1. 제안이유

시각장애와 청각장애를 같이 가진 중복장애인의 경우 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렵고, 정보공개청구는 더욱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집행기관의 장은 행정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시청각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며, 시청각장애인의 행정정보공개 청구와 정보 접근이 편리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집행기관의 장은 행정정보를 공개할 때 시청각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며, 시청각장애인의 행정정보공개 청구와 정보 접근이 편리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4조제4항 신설)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
-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4항과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집행기관의 장은 행정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시각장애인과 시청각장애인(시각 및 청각 기능이 손상된 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접근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며, 시각장애인과 시청각장애인의 행정정보공개청구와 정보 접근이 편리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⑤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서울특별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 제4항을 신설함에 따라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제3조제1항제1호)

나. 추계결과 ≒ 1,310,80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1,310,800천원으로 연평균 262,16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시각장애인과 시청각장애인 모두의 정보 접근 편리를 위한 조치(의사소통 보조기구)는 점자정보단말기를 통한 점자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전제
 - 행정정보공개 청구와 정보 접근이 편리하도록 조치를 마련하는 방법은 시각장애인과 시청각장애인의 접근이 쉽도록 시청, 구청, 주민센터에 점자정보단말기를 순차적으로 설치하는 방법으로 전제
 - ※ 시청(1개소), 구청(25개소), 주민센터(200개소) 총 226개소에 개소당 1대 설치
 - ※ 1차년도에 26개소 설치 : 시청(1개소), 구청(25개소)
 - ※ 2~5차년도에 걸쳐 50개소씩 200개소 설치
 - 총 주민센터는 424개소이나 200개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전제(총 424개소의 절반인 212개소 중 12개소는 버림)
 - 점자정보단말기 비용은 1대당 5,800,000원으로 전제(2019년 서울도서관 정보서비스과 구입 산출 단가 준용)
 - 비용은 2020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 이후에도 계속 발생
 - 물가상승률 미반영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 비용(합계) ≙ 1,310,800천원

- 총비용 = 설치기관 수 × 점자정보단말기 구입 비용

· 1차년도 : 26개소 × 5,800천원 = 150,800천원

· 2~5차년도 : 50개소 × 5,800천원 × 4년 = 1,160,000천원

※ 설치기관 수

- 1차년도 : 26개소 설치(시청 1개소, 구청 25개소)

- 2~5차년도 : 총 200개소의 주민센터에 매년 50개소씩 설치

※ 점자정보단말기 구입비용은 2019년 서울도서관 구입 산출 단가 준용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행정정보 공개 시 시(청)각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형태로 제공 및 행정정보 공개 청구와 정보 접근이 편리하도록 조치 마련 비용 (제4조 제4항)	150,800	290,000	290,000	290,000	290,000	1,310,800
	소계(b)	150,800	290,000	290,000	290,000	290,000	1,310,800
	총비용(b-a)	150,800	290,000	290,000	290,000	290,000	1,310,800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당관 남승우

사업평가팀장 이정수

주무관 백소영

☎ 02-2180-7954

e-mail : thdud36@seoul.go.kr